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52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 나.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환수
- 다. 정신건강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 나. 예산조치 : 서울시 교부예산 간주처리 후 사용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본인부담금)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법령의 범위 안’이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는바, 정신건강검진·상담 비용 지원은 「보건의료 기본법」 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은 없음.
- ‘그 사무에 관하여’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를 의미하는바, 정신건강검진·상담비용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감염

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신건강검진·상담비용은 개별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하려면 개별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사전승인이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야함을 의미함.(보건복지부 지침)
-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50대(50세~59세)의 우울증 진료 환자가 전체 연령에서 20.8%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¹⁾, 또한, 50대의 자살자도 전체 연령에서 20.5%로 조사되어²⁾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조기은퇴로 인한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보임.

1) 2012 서울시 정신보건지표

2) 2014 통계청 자료

참고로, 2016년 4월말 현재 영등포구 50대 인구는 전체 378,315명의 15.8%인 59,784명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1천1백만임.

- 제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조례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등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협의체 기능,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 고 자 료

1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